

■ 논 단

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김 순 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요 약 문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마다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감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일에서도 “감사회는 좋은 시기에는 쓸모없고, 나쁜 시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Der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는 말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기업환경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일본 고유의 제도인 감사 제도가 혼재하여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지 23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근감사의 설치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 최소한 1인의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감사업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재 제한이 없는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30일 개최된 제11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넷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보조조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 감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감사기관, 외부감사법, 기업지배구조

— <目 次> —

I. 서 설	2.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II. 회사의 종류별 감사기관의 유형	
1.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IV. 상법상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유한회사의 감사기관	1. 주식회사의 감사 문제
3.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	2. 유한회사의 감사 문제
4.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감사	3.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문제
III.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	V. 결 어
1.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	

I. 서 설

2021년 이후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기업의 유형도 상장회사, 금융회사, 공사, 지방정부 등 매우 다양하다. 횡령금액 순서로 10대 사건만 보면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 우리은행(697억원), 계양전기(245억원), 대우조선(200억원), 서울 강동구청(115억원), 현대제철(100억원 추정), KB저축은행(94억원), 한국수자원공사(85억원), 김포파주인삼농협(70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경기 광주지역 농협(50억원) 등이다.¹⁾

1) 뉴스저널리즘, “기업들은 지금 ‘대횡령 시대’ … 올해 횡령사건 순위 매겨 봤더니”, <<http://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163>>(2022. 10. 16. 방문).

횡령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무관리 감사체계의 부실, 내부통제의 미비,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은닉된 범죄의 노출, 횡령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한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고, 2019년 주기적인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적극적인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회계신인도의 순위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반회사, 금융회사,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횡령 사고가 빈발하면서 2022년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경쟁력 순위 보고서(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Auditing and accounting practices) 순위가 5년 만에 주요 63개국 중 53위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4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53위로 하락하였다.²⁾

기업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상 1차적으로 경영자가 내부통제제도를 철저히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는 내부감사가 견제기능을 내실 있게 하여야 하며, 3차적으로는 외부감사가 회계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횡령 사건은 내부감사나 내부제보를 통해 발각된 경우가 많은데,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상 감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사 유형별 감사기관의 형태를 논의하고, 현행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사의 종류별 감사기관의 유형

1.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가. 비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총액 1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선비즈,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 이유는 오스텔·우리은행 횡령 탓?”,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6/29/RJEFRRIHNF3AA3NJNPSVINCXVXA/> (2022.10.22. 방문)

나.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상장회사의 감사기관은 회사 규모에 따라 비상근감사, 상근감사(상법 제542조의10),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로 구분된다. i)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최소한 비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542조의11 또는 제415조의2에 근거한)를 설치할 수 있다. ii)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괄호, 상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또는 제542조의11에 근거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가 아닌 회사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부담을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둬으로써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³⁾ iii)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고,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제542조의11 제2항).

2. 유한회사의 감사기관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상법 제568조 제1항). 즉,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임의기관이지만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제568조 제1항) 그 직무권한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이다.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569조).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감사가 모두 임의기관이므로 법적으로 유한회사의 감사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⁴⁾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이 되고, 이사회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의 임기제한이 없다.

주식회사 규정 중 유한회사 감사에 준용되는 규정으로는 감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회사성립 전 감사선임에 관해서는 제568조 제2항), 회사와의 관계(제382조 제2항), 해임(제385조 제1항), 결원의 처리(제386조), 보수(제388조), 책임(제414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제400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제407조), 겸임금지(제411조), 사원총회에 대한 의안 및 서류의 조사·보고·의견진술의무(제413조), 사원의 대표소송(제565조) 등이다(제570조).

3) 제542조의10의 상근감사와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선임할 때 최대주주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의결권 제한을 받은 데 비하여, 후자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선임절차상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4)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0판]」, 박영사, 2022, 1230면.

유한회사의 감사는 이사처럼 임기의 제한이 없다. 유한회사의 감사에 독특한 점으로는 임시 총회소집권(제571조 제1항), 법원의 결정에 의한 총회소집(제582조 제3항)이 있고, 설립 및 증자 시의 자본전보책임(제551조, 제594조)을 진다는 것 등이다. 설립무효의 소(제552조 제1항) 및 증자무효의 소(제595조 제1항)의 제소권이 있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다.⁵⁾

유한회사에서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감독기능은 사원총회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권을 통한 회계감사(제58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정관에서 정한 경우 각 사원에게 부여된 장부열람권(제581조 제2항)에 의해 수행한다. 또한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 수를 가지는 소수사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회계장부와 서류열람권(제581조 제1항), 검사인 선임청구에 의한 업무재산 상황의 조사권(제582조 제1항), 총회소집권(제572조 제1항), 이사해임청구권(제567조, 제385조 제2항), 대표소송권(제565조 제1항) 및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564조 의2) 등에 의해서도 수행한다.

각 사원은 총회에서 설명청구권을 가지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 및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578조, 제367조). 그리고 소수사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582조 제1항).⁶⁾

3.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개정에 따라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⁷⁾와 일본의 합동회사(일본회사법 제576조 제4항) 제도에 근간을 두고 도입한 것이다.⁸⁾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간 차이점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내부자치가 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유한회사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도 대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⁹⁾

유한책임회사 사원 중 업무집행자가 되지 못한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서 소외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다. 이에 따라 상법은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5) 이철송, 전계서, 1229면.

6) 정동윤 편, 「주식 상법[회사(VI)](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이하 “주식 상법[회사VI]”라 한다), 227면.

7) 미국의 LLC는 1977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부동산, 첨단기술,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 회사 등 고도의 모험사업,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LC에 대해 1988년 연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파트너십 과세를 허용하고, 1997년에는 파트너십 과세와 법인세 과세 중 선택을 허용함으로써(check-the-box regulation) 그 이용이 급증하였다(정동윤 편, 「주식 상법[회사(II)](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이하 “주식 상법[회사II]”라 한다), 35면[김순석 집필부분].

8) 정동윤 편, 주식 상법[회사II], 34면.

9) 노혁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의 비교”, 「BFL」 제32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36면.

이 회사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갖는 것과 같은 감시권을 부여하였다.¹⁰⁾ 즉,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을 정한 상법 제277조를 준용한다(제287조의14).

합자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한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제277조)을 가지는 것에 의해 감사 기능을 담당한다.¹¹⁾

4.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감사

가. 합명회사의 감사

합명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원은 당연히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그 행사에 의해 사원은 상호 간에 감독할 수 있다.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00조 제2항). 이를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권(Widerspruchsrecht)이라 하며, 이의를 무시하고 한 행위도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고, 대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뿐이다.¹²⁾ 이의제기는 일종의 업무집행에 속하므로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의권은 내부 문제이므로 정관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¹³⁾

예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감시권을 가지는 것에 의해 감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사원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이는 사원의 고유권으로서 정관으로도 이 규정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¹⁴⁾

업무감시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소를 비롯한 모든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상업장부를 비롯한 모든 서류를 열람·조사할 수 있다. 사원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업무감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¹⁵⁾

10) 이철송, 전거서, 207면.

11) 합자회사의 감시권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I.4.나. 참조.

12) 정동윤 편, 「주석 상법[회사 I][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이하 “주석 상법[회사 I]”라 한다), 225면[정동윤 집필부분].

13)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7판]」, 삼영사, 2017, 322면.

14) 정동윤 편, 주석 상법[회사 I], 225면.

15) 권순일 편, 「주석 상법[회사 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377~378면.

나. 합자회사의 감사

(1) 일반감사권

합자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한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상법 제277조)을 가지는 것에 의해 감사 기능을 담당한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제277조 제1항). 감시권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회사영업의 방해 또는 기밀의 누설 등 폐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은 업무집행권이 없는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는 이의권(제269조, 제200조 제2항)과 비교하면 그 감독 범위가 좁다. 유한책임사원은 이미 수행된 업무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고, 이의권의 경우처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유한책임사원은 각자 독립하여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⁶⁾ 유한책임사원의 일반감시권을 정관으로 제한할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¹⁷⁾

(2) 특별감시권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법 제277조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27조 제2항). 중요한 사유란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제한 없이 열람·검색할 상황이 생겼음을 뜻한다.¹⁸⁾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동법 제467조 제1항 참조)가 있음을 의미한다.¹⁹⁾ 이 경우 법원에 대한 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81조).

III.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

1.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2년 4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89개사를 대상으로 정

16) 권순일 편, 전계서, 650면.

17) 권순일 편, 전계서, 651면.

18) 이철송, 전계서, 191면.

19)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新版注釋會社法(1)」, 有斐閣, 1985, 628면.

관 기재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회사 중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2021년 358개사(45.9%)에서 2022년 347개사(44.0%)로 감소하였으며,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2021년 422개사(54.1%)에서 2022년 442개사(56.0%)로 소폭 증가하였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42개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특례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무적인 설치회사는 2021년 166개사(39.3%)에서 2022년 185개사(41.9%)로 증가하였다.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2021년 256개사에서 2022년 257개사로 거의 변경이 없었다. 자율적인 설치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특례감사위원회의 자율적인 설치회사가 2021년 243개사(57.6%)에서 2022년 244개사(55.2%)로 변경되었고,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일반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2021년 13개사(3.1%)에서 2022년에도 13개사(2.9%)로 변함이 없었다. 특이한 사례로서 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규정한 회사가 5개사이며,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함께 규정한 회사도 1개사가 있다.²⁰⁾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선택 여부]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감사제도	347	44.0	358	45.9
*② 감사위원회제도	442	56.0	422	54.1
계	789	100.0	780	100.0

※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 : 185개사(41.9%)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감사위원회 자율설치 법인 : 244개사(55.2%)

자산 1천억원 미만 감사위원회 자율설치 법인 : 13개사(2.9%)

※ 기업은행은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법인이나 중소기업은행법 제24조 의거, 감사 1인을 두고 있음

※ 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규정한 회사(5개사) 및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함께 규정한 회사(1개사, 와이투솔루션) 등이 있음

이처럼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이 도입되고,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의무적인 공시대상이

20) 정순현·김춘, 「2022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이하 “2022 정관 기재유형”이라 한다), 1, 9~11, 40면; 정순현·김춘, 「2021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9~10, 45면.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된 점²¹⁾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409조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8항). 이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완화된 선임결의 요건을 규정한 회사는 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2021년 192개사(53.6%)에서 2022년 259개사(74.6%)로 증가하였으며,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2021년 198개사(46.9%)에서 2022년 275개사(62.2%)로 증가하였다.²²⁾

[감사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 규정 여부]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회사수	구성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① 일반 보통결의 요건만 규정	74	21.3	136	38.0
*② 완화된 선임 결의요건 규정	259	74.6	192	53.6
③ 결의요건 규정 없음	14	4.1	30	8.4
계	347	100.0	358	100.0

※ 결의요건 규정없는 회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인 회사 등임

[감사위원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 여부]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회사수	구성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① 완화된 선임 결의요건 규정	275	62.2	198	46.9
② 결의요건 규정 없음	156	35.3	212	50.3
③ 기타	11	2.5	12	1.5
계	442	100.0	422	100.0

※ 기타는 1천억원 미만 일반감사위원회 채택한 경우 등임.

21)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보도자료, 2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2024년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22) 정순현·김춘, 2022 정관 기재유형, 41, 43면.

2020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제도(제542조의12 제2항)를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2021년 207개사(49.1%)에서 2022년 267개사(60.4%)로 증가하였다.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수는 1명인 회사가 2021년 201개사(97.1%)에서 2022년 245개사(91.8%)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는 2021년 2개사(1.0%)에서 2022년 17개사(6.3%)로 증가하였다.²³⁾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의 유무](감사위원회의 규정을 둔 442개사 대상)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1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규정 있음	267	60.4	207	49.1
② 규정 없음	175	39.8	215	50.9
계	442	100.0	422	100.0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을 둔 267개사 대상)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1년	구성비
	회사수		회사수	
*① 1명	245	91.8	201	97.1
② 2명	1	0.4	1	0.5
③ 3명	4	1.5	3	1.4
④ 1명 이상	17	6.3	2	1.0
계	267	100.0	207	100.0

2.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이 2017년 11월 크게 개정되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23) 정순현·김춘, 2022 정관 기재유형, 43~44면.

가.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수 등의 결정 권한 부여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고, 회사는 이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²⁴⁾ 그 밖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제5항),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6항).

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과거 경영진에게 부여되었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감사(감사위원회)에게 귀속시킨 것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고,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문서화한 준수사항을 사후에 확인하도록 한 것은 감사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²⁵⁾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가 임의기관이며(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선임하지만(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다목),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이 경우 감사인 선정에 대해 규정이 없는데 회사가 선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 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24)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선정과 선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정은 여러 감사인 후보 중 하나를 골라내는 행위를 의미하고, 선임은 회사가 선정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주식외부감사법」, 박영사, 2019, 161면[이재원 집필부분]).

2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전거서, 161, 165면(이재원 집필부분).

2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전거서, 162면(이재원 집필부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9조 제7항).

행정제재로서 감사가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동법 제47조 제2항 제2호 후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속하므로 상법상 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²⁷⁾ 외부감사법은 감사의 직무 중 하나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책임을 높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 부정행위 등 조사 및 보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6항).²⁸⁾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3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상법은 감사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주식회사 상법 제412조, 유한회사 상법 제569조) 외부감사법상 감사의 조사권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식회사에 한정되는 데 비하여,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기준의 유한회사도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된 데에 의의가 있다.²⁹⁾

감사(감사위원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27) 권재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 역할 검토”, 「경영법률」 제29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8면.

28)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에 대해서도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29) 권재열, 전게논문, 16면.

라. 재무제표 작성 감독

우리나라의 상당수 영세한 상장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여 외부감사인인 대신 작성하여 주는 관행이 존재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³⁰⁾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2017년 개정 전에는 재무제표의 대신 작성이나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인에게만 금지하고 제재도 외부감사인에게만 하였다. 2017년 개정법에서는 대리 작성 및 자문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제도 부여되고 제재대상에 회사도 포함되었다.

재무제표 작성 감독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 외부감사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기본적인 직무이므로(상법 제412조), 감사는 재무제표가 회사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³¹⁾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와 재무제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모범규준 V.2.2).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및 CFO 조직과 활발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³²⁾

마.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부회계관리 규정 내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다목).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41조 제5호),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1호). 또한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30) 황보현,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8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19), 123면.

31) 권재열, 전제논문, 4~5면.

32) 김유경,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실무 역량의 강화”, 「BFL」 제95호(2019), 22~23면.

금에 처하며(동법 제43조),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또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포상금을 개정 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시켰다(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러나 외부감사법의 내부신고제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는 달리(동법 제8조의2 제1항) 감사에게 고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외부감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포상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외부감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 포상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³³⁾

부정조사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 ACFE)³⁴⁾의 2022년도 ‘직업사기 보고서(Occupational Fraud 2022)’에 따르면 기업의 부정행위 적발의 42%가 내부신고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내부신고의 55%가 종업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³⁵⁾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사(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사후처리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⁶⁾

IV. 상법상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식회사의 감사 문제

가. 이사회와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원래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 환경에서 지배주주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감독할 때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는 기구로 발전한 것이다.³⁷⁾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

33) 권재열, 전제논문, 12~13면.

34) ACFE는 세계 최대의 사기방지조직으로서 사기 및 화이트칼라 범죄를 억제하고 사기 수사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acfe.com/about-the-acfe>).

35) ACFE,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pp. 21-22.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ACFE가 조사한 2,110개 사례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ACFE, op. cit., p. 6).

36) 김유경, 전제논문, 23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저널」 제4호(2017), 30면.

37) John C. Coffee, Jr., “The Future as History: The Prospect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업환경에서 발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이 높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³⁸⁾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1999년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도입되었다. 채권단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제도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강요함에 따라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할 여유가 없이 서둘러 도입되었다. 종래 2원제 아래에서 기능하였던 감사 제도와 1원제 아래 운영되는 감사위원회가 중복됨에 따라 제도는 복잡해진 반면, 감사 기능의 실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년 후인 2002년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³⁹⁾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집행임원도 함께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일본회사법 제326조 제2항).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태로 도입하였는데(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지금까지 채택한 기업이 거의 없어서 사문화된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회사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 사외이사의 선임에도 지배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더라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⁴⁰⁾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23년이 지난 현재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기능면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할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도 동일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⁴¹⁾ 영국은 집행임원제를 채택하지 않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지만 이사회가 경영 및

and Its Implications”, 93 Nw. U. L. Rev. 641, 705-706 (1999).

38) 김순석, “미국 감사위원회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상법학의 전망(평성임흥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3, 239면.

39) 일본은 미국 상장회사에서 전형적인 기업지배구조(모니터링 모델)를 참고로 하여 2002년 ‘위원회등설치회사’를 도입하고, 2005년 회사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설치회사’로 개칭되었다.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 감사등설치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로 다시 개칭하였다(田中亘, 「會社法[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21, 328면).

40) 송종준, “주식회사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조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4호(법무부, 2013), 14면.

41) 일본의 경우 주식회사(특히 상장회사)의 조직형태는 전통적으로 감사설치회사가 주류이었으나, 그 감사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미국 상장회사의 조직형태를 참고로 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겸하는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에 업무의 감사·감독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위원회등설치회사’(현행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명과 보수에 관한 권한을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회사(경영진)의 거부감이 강했으며,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조직형태를 취한 회사는 현재에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 2020년 9월 8일 현재 동경증권거래소 상장회사 3,676개사 중 감사회설치회사는 2,492개사(67.8%),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는 1,107개사(30.1%), 지명위원회등설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⁴²⁾ 영국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⁴³⁾ 감사인(auditor)⁴⁴⁾을 두어야 한다.

독일은 이사회(Vorstand)가 경영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감독은 감사회(Aufsichtsrat)가 맡는 이원적 이사회 체제(two-tier board system)를 취하고 있다. 감사회가 경영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경영감독과 이사회 구성원을 선·해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독일주식법 제84조). 일본은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회,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등 중 하나는 설치해야 하며(일본회사법 제328조 제1항), 기업의 실정에 따라 기관설계 유형을 매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⁴⁵⁾

우리나라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통하여 관련 규범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서 집행임원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하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채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의 적용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법 제415조의2에 근거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두지 않게 되므로 내부감사를 받지 않게 되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단지 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감사·감독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에 의한

치회사 77개사(2.1%)에 달한다(田中亘, 前掲書, 315~317면).

42) 김영주,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임면 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95~96면.

43)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회사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EU 감사지침(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4/253/EEC) 제39조에서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공시 및 투명성 규칙'(Disclosure and Transparency Rule 7)을 제정하여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기업지배구조코드는 런던증권거래소 프리미엄부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상장규칙은 그 이행 여부를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Listing Rules 9.8.6.(5)(6)) 감사위원회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공시 및 투명성 규칙'과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적용범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실무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Paul L. Davis & Sarah Worthington,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0th ed., Sweet & Maxwell, 2016, p. 757).

44) 우리나라는 감사인에 관하여 외부감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은 2006년 회사법 내에 감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Companies Act 2006, Part 16).

45) 田中亘, 前掲書, 154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감사·감독만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감사·감독을 용인하는 것으로 상법상 기관 간 권한분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일지라도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⁴⁶⁾

다.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1) 사외이사의 자격과 개선방안

상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해당 회사나 계열 회사의 임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냉각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비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동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회사에서의 냉각기간은 2020년 1월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해당 회사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는 그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와의 관계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보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냉각기간을 더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자를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⁴⁷⁾ 냉각기간에 대해 미국의 NYSE 규정과 NASDAQ 상장규정은 3년(NYSE Listed Company Manual § 303A.02(b)), 영국은 대상에 따라 3년 또는 5년(UK CG Code 2018, Provision 10), 프랑스는 5년(§ 9.5, Code AFEP-MEDEF), 일본은 10년(일본회사법 제2조 제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⁸⁾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시행령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이는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의 선임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 아래 선임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46) 송중준, 전제논문, 17면.

47) 동지, 노미리,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 「법조」 제71권 제1호(법조협회, 2022), 258면.

48) 주요국의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의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김영주, 전제서, 53면 이하 참조.

전문적인 사외이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⁴⁹⁾ 오히려 기업 현실에서는 독립성을 먼저 확보해야만 전문성도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따라서 상법시행령이 아니라 상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⁵⁰⁾

(2) 상임감사의 결격사유에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포함 필요

상법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제542조의8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는 될 수 없는 반면 상근감사는 될 수 있다. 상근감사는 사외이사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지위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제5호가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⁵¹⁾

라. 상장회사 감사위원 1인 분리선임제 운영상의 문제점('20년 개정)

(1) 분리선임제의 내용

2009년 개정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1단계에서 3%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해 3% 의결권 제한을 하면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다(개정 전 제542조의12 제2항). 그러나 일괄선임방식은 1단계에서 지배주주가 의결권 제한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사를 선출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임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이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되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⁵²⁾ 또한 감사를 선임하는 데는 3% 의결권 제한이 되는 것과의 불균형도 지적되었다(제409조 제2항).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분리선임 방식을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여 금융회사의 경우 분리선임방식이 정착되고 있었으며(동법 제19조 제5항), 외국계 펀드 등의

49) 정준우,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21), 139면; 송옥렬,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경영법률」 제31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132면.

50) 정준우, 전계논문, 139면.

51) 정준우, 전계논문, 130면.

52) 법무부, “법무부는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 12. 9.) —”, 2020. 12. 9. 보도자료, 6면.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사례도 없었다.⁵³⁾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상법개정에서 감사위원 중 1명(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은 분리선임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나머지 감사위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선임하도록 하였다(동항 본문). 분리선임 방식의 도입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영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⁵⁴⁾ 그러나 감사위원 1명만의 분리선임만으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⁵⁵⁾

(2) 회사 제안 후보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은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1명 이상을 분리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상법과는 달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후보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분리선임을 해야 하는지, 분리선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된다.⁵⁶⁾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1명은 분리선임되어야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⁵⁷⁾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정한 안전과 다른 내용의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분리선임의 범위를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사전에 분리선임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안전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범위를 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다른 주주제안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상법은 분리선임 범위에 관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1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3) 1인 분리선출시 회사 제안 후보와 소수주주 제안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법

이에 대해서는 일괄표결 방법이나 순차표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괄표결방식은 이사

53) 법무부, 전계 보도자료, 6면.

54) 심영, "상법상 감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17), 63면.

55) 정준우, 전계논문, 142면.

56) 김지평,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 「저스티스」 제169호(한국법학원, 2018), 112면.

57)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 52~53면.

58) 김지평·김승준, "2020년 개정 상법의 분석 2: 감사·감사위원의 선임과 주주총회 관련 사항", 「BFL」 제10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29면.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주주들로 하여금 이사 후보자 중 선출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만 1주당 하나의 의결권씩 투표할 수 있게 하여 선임하거나,⁵⁹⁾ 후보자 전원을 일괄상정한 다음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후보자별로 찬반 표시를 하도록 하여 다득표자 순서로 선임하는 것이다.⁶⁰⁾

순차표결 방법은 후보자 별로 순차로 표결을 진행하여 정족수를 확보한 후보자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선임되면 그 이후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중단하는 방식이다. 순차표결 방식은 의장이 표결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따라 선임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의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주주총회 취소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⁶¹⁾ 따라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서도 복수 후보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괄표결 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⁶²⁾ 일괄표결에서는 다득표자 순서로 선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탈락한 후보가 생길 수 있다.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의사진행방식에 대한 선결 안건으로 분리선출 방식을 상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미리 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⁶³⁾

(4) 퇴임이사의 법리가 분리선임 감사위원의 퇴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임이사의 법리가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갑자기 사임하거나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아직 후임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결국 분리선임에 관한 제542조의12 제2항을 감사위원의 정원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된다.

제1설은 퇴임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로서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회사에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라면 해당 퇴임 감사위원이 새로 선임된 분리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본다.⁶⁴⁾

59) 예컨대,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후보자가 3명인 경우에 각 주주는 2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각각 행사하는 것이다(김지평·김승준, 전제논문, 31면, 각주) 19).

60) 송옥렬, 전제논문, 144면.

61) 송옥렬, 전제논문, 145면.

62) 김지평·김승준, 전제논문, 31면; 송옥렬, 전제논문, 145면; 천경훈,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한국경제법학회, 2021), 28면.

63) 김지평·김승준, 전제논문, 31면.

64) 심영, “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은 이사의 정원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의 정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42조의11 제4항, 제542조의8 제3항), 이처럼 차기주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⁶⁵⁾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정(제542조의12 제2항)도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격의 감사위원이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명시적인 차기주총 규정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퇴임이사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⁶⁶⁾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제2설이 타당하다. 이 경우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은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퇴임으로 감사위원의 지위를 상실하며, 퇴임등기도 가능하다.⁶⁷⁾

(5) 기존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분리선출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등을 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 3%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감사위원 공석을 보충하고, 이사 공석은 새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임하는 방식(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 의결권 제한 규정 미적용)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기존 일괄선출 방식과 유사하게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인은 기존의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서는 아니되고,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⁶⁸⁾

마. 감사(감사위원)의 상근 문제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지만 상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상근’이라 함은 정규 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⁶⁹⁾ 감사의 독립적 기능 수행은 감사(감사위원)의 법률

2021), 49면.

65) 김지평,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6호(법무부, 2016), 21, 25면.

66) 김지평·김승준, 전계논문, 33면.

67) 송옥렬, 전계논문, 148면.

68) 김지평·김승준, 전계논문, 32면.

69) 김춘,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상장」 제489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5), 50면. 반면 ‘상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상시 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로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이처럼 상근과 상무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무상은 대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 강화된 책임규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경영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미진하였던 측면이 있으며, 이는 감사(감사위원)의 비상근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근의 감사나 감사위원만으로는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⁷⁰⁾ 실제로 202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442개사 중 그 96.6%인 427개사가 비상근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상근감사위원에 관한 규정의 유무](감사위원회의 규정을 둔 442개사 대상)⁷¹⁾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규정 있음	15	3.4	13	3.1
*② 규정 없음	427	96.6	409	96.9
계	442	100.0	422	100.0

※ 구성비 = (규정한 회사수/감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한 회사수)X100

감사(감사위원)의 상근제는 감사업무가 복잡해지고 내부통제 중심의 사전적 해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근감사의 설치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이나,⁷²⁾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최소한 1인의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안⁷³⁾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위원이 상근을 하게 될 경우 그 지위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그 결과 감사대상인 경영자의 눈치를 볼 우려가 제기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⁷⁴⁾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된다.

70) 김홍기,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20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19), 29면; 송종준, 전제논문, 20면.

71) 정순현·김춘, 「2022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43면.

72) 김홍기, 전제논문, 30면; 송종준, 전제논문, 21면; 이준섭,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정립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49면; 정래영,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7), 77면;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 II[제4판]」, 법문사, 2022, 1428면(정준우 집필부분).

73) 김홍기, 전제논문, 30면; 동지, 송양호, “상장회사 특례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12), 172면; 송종준, 전제논문, 21면; 동지, 이준섭, 전제서, 49면.

74) 김전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6판]」, 박영사, 2022, 536면.

바. 자본금총액 1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감사 자격

상법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와 같은 특별한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반면 그 이외의 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없다. 즉, 소규모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자본금총액 1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감사로 등재만 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금총액 1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거래상대방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은 감사의 독립성에 관해 감사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직위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사 모범규준 II.2). 이러한 모범규준은 감사의 자격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모범규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

2009년 5월 개정상법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9조 제4항).⁷⁵⁾ 이에 따라 소규모주식회사의 기관설계는 ① 이사회와 감사를 모두 설치한 회사, ② 이사회만 설치하고 감사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③ 이사회는 설치하지 않고 감사만 설치한 회사, ④ 이사회와 감사 모두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회사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④의 유형이 문제된다.⁷⁶⁾

75) 법무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2009. 4. 29. 보도자료, 1, 11~13면.

76) 서성호,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4), 240면.

이처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5 제1항·제2항(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제409조 제6항).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412조 제1항·제2항). 또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또한 주주총회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제412조의5 제1항),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처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감사의 권한이 주주총회로 이관되었다(제409조 제6항).

일본의 경우 2005년 회사법 제정에 따라 기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편입되었다. 유한회사를 회사법제에 수용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사가 대회사가 아닌 경우 기관설계의 기본형으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상만 존재하는 형태를 설계하였다. 이때에는 비공개회사이므로 이사회가 강제되지 않아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선임하면 족하며, 대회사가 아니므로 회계감사인의 선임도 필요 없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법제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선임도 강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회사법은 비공개회사가 대회사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아 기존 유한회사의 유형이라 볼 수 없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참여’⁷⁷⁾ 제도를 설치하여 회계부분에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유한회사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법제에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소규모주식회사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⁷⁹⁾ 즉,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나 이사회에 의한 감사 기능

77) 회계참여는 주식회사의 계산(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회계참여는 이사(지명위원회 등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부속명세서, 임시계산서류, 연결계산서류를 포함)를 작성한다(일본회사법 제374조 제1항). 감사나 회계감사인과는 다르며 회사의 감사기관이 아니고 업무집행기관의 하나이며, 회사의 임원이다(동법 제329조 제1항). 회계참여의 설치는 각 회사의 재량이다. 다만, 비공개회사인 이사회설치회사(위원회형 회사 제외)가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참여를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327조 제2항 단서). 회계참여에는 회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즉, 공인회계사, 감사법인(공인회계사를 사원으로 하는 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이 취임할 수 있다(동법 제333조 제1항). 회계참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계참여 설치회사라는 것 및 회계참여의 성명, 명칭은 등기사항이다(동법 제911조 제3항 제16호)(田中亘, 前掲書, 146, 294면).

회계참여는 회사법에 따라 창설된 기관이며, 그 목적은 회계전문가 특히 종래부터 중소기업의 계산관계서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세무사·세무법인에게 회사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에서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특히 중소기업)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보급될 것인가는 회계참여설치회사의 계산관계서류가 거래계에서 보다 신뢰를 얻는 것, 예컨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쉽게 되는(금리인하) 등 장점이 생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田中亘, 前掲書, 294면)(일본의 회계참여 제도에 관한 소개는 박수영, “일본 신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08), 169면 이하 참조).

78) 서성호, 전계논문, 248면.

79) 서성호, 전계논문, 248면.

이 없게 되어 주주총회가 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에 의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기능은 유한책임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인식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감사기능은 필요하다고 본다.⁸⁰⁾

일본의 경우 소규모주식회사일지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회사의 경우 회계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회계부분에 관한 최소한의 감사기능을 존속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일본회사법 제327조 제2항 단서). 회계참여는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되어 이들이 주주총회에 보고할 계산서류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제출하게 되므로 계산서류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신규 거래처 확보에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조건이 유리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⁸¹⁾

우리나라의 소규모주식회사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최소한의 회계상의 감독 기능을 유지하도록 감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⁸²⁾ 소규모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계산·공시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감사제도를 회계감사에 한정하면서 유지하는 방안이나⁸³⁾ 일본의 회계참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적정한 공시제도의 강화⁸⁴⁾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 문제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조직이 간소하고 사원이 비교적 소수이므로 사원 상호 간에 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도 대규모가 있을 수 있고, 주식회사처럼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재산이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재산이 된다는 점에서 감사기관의 필요성은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규정한 입법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⁸⁵⁾ 유한회사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 서완석·이영철,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경영법률』 제29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54면.

81) 박수영, 전계논문, 173면; 서성호, 전계논문, 254면.

82) 동지, 한국상사법학회 편, 전계서, 1453면(정준우 집필부분).

83) 서성호, “한국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 2009년 5월 28일 및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11), 164면

84) 서완석·이영철, 전계논문, 57면

85) 정동윤 편, 주석 상법[회사VI], 225면[노일석 집필부분].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하였다(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3호). 2011년 개정상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다.⁸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음에 따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수가 2010년말 306개에서 2014년말 기준 586개로 2배 정도 증가하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외국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⁸⁷⁾ 이러한 기업들이 정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배당금 등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해 조세부담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⁸⁸⁾ 이처럼 유한회사를 통해 외부감사에 대한 규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⁸⁹⁾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에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을 추가하였으며(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⁹⁰⁾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한다(동법 제3호 단서).

한편 회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점을 고려할 때 상법 제570조를 개정하여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412조 제3항을 유한회사에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⁹¹⁾

86) 최지현(국회입법조사처), “다국적 기업의 「외감법」 적용에 대한 법개정 논의”, 「다국적기업(유한회사)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 논의」 공청회(김해영 의원 주관) 자료집, 2016. 11. 29.

87) 알리바바코리아(2014년), 트위터코리아(2015년), 테슬라코리아(2015년) 등.

88) 고미현·김동욱·강상엽, “외부감사기준 개정에 따른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회피형태”, 「재무회계정보저널」 제21권 제3호(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2면.

89) 국회 정무위원회(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3. 12면.

90) 외부감사법시행령 제5조 ②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제2호(매출액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함)이 50명 이상

91) 2018년 말 기준 유한회사는 30,398개가 설립등기되어 있어 설립등기된 회사 전체 878,943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주식회사 설립이 압도적이나 최근 유한회사 설립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대익,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32집 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122면).

3.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문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갖는 감시권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287조의14,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제277조 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277조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제277조 제2항).

감시권이 인정되는 것은 이러한 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을 감독할 기관을 상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 이외에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할 자가 없으므로 사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원권은 주식과는 달리 자유 양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제287조의8 제1항), 조사권을 남용하여 회사 경영을 교란시켜 기업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탈퇴하기도 어렵다.⁹²⁾

일본회사법에는 합동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회사가 감독기관을 두어야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정관으로 일부 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일본회사법 제592조 제1항). 이러한 조사권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나 중요한 사유(업무집행사원이 부정행위를 한 의심이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592조 제2항 단서). 이는 우리나라의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 제도에서의 제한된 감시권(상법 제287조의14, 제277조)과는 다른 부분이다.⁹³⁾

즉, 일본회사법상 지분회사의 경우 i) 영업년도 말에 행사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라는 시간적 제약이 부과되지 않으며, ii)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라는 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어 있다.⁹⁴⁾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도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처럼 행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전제로 도입되어 유한회사의 강력한 경쟁적 회사유형으로 예견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설립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2015년 이전과는 달리 2016년 이후 매년 300개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학습효과가 누적되고 그 장점이 알려지면 설립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한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92) 江頭憲治郎・中村直人, 「論點体系 會社法 4 - 株式會社IV, 持分會社」, 第一法規, 2012, 404면.

93) 서성호, “유한책임회사제도에 관한 총체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33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9), 205면.

94) 江頭憲治郎・中村直人, 前掲書, 404면.

를 꺼리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⁵⁾ 기존의 유한회사들은 상법상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후 곧바로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⁹⁶⁾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에는 외부감사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 결 어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가마다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감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일에서도 “감사회는 좋은 시기에는 쓸모없고, 나쁜 시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Der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는 말이 회자되는 실정이다.⁹⁷⁾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기업환경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일본 고유의 제도인 감사 제도가 혼재하여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지 23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사회와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근감사의 설치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 최소한 1인의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감사업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채권자

95) 정대익, 전계논문, 123~124면.

96) 또한 기존 유한회사의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 유한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자산을 양수할 수도 있다(정대익, 전계논문, 125면).

97) 이형규, “감사·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제32권 제3집(한양법학회, 2021), 94면.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재 제한이 없는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보조조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

(논문접수 : 2022. 9. 7. / 심사개시 : 2022. 10. 5. / 게재확정 : 2022. 10. 19.)

참 고 문 헌

- 고미현·김동욱·강상엽, “외부감사기준 개정에 따른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회피형태”, 「재무회계정보저널」 제21권 제3호(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 국회 정무위원회(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3.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7판]」, 삼영사, 2017.
- 권순일 편, 「주식 상법[회사1](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권재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 역할 검토”, 「경영법률」 제29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
-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6판]」, 박영사, 2022.
- 김순석, “미국 감사위원회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상법학의 전망(평성임홍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3.
- 김영주,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임면 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 김지평,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 「저스티스」 제169호(한국법학원, 2018).
- _____,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6호(법무부, 2016).
- 김지평·김승준, “2020년 개정 상법의 분석 2 : 감사·감사위원의 선임과 주주총회 관련 사항”, 「BFL」 제10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 노미리,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 「법조」 제71권 제1호(법조협회, 2022).
- 김 춘,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상장」 제489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5).
- 노혁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의 비교”, 「BFL」 제32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 박수영, “일본 신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08).
- 법무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2009. 4. 29. 보도자료.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저널」 제4호(2017).
- 서성호, “한국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 2009년 5월 28일 및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11).
- _____,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4).
- _____, “유한책임회사제도에 관한 총체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33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9).
- 서완석·이영철,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경영법률」 제29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 송양호, “상장회사 특례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12).
- 송옥렬,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경영법률」 제31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 송종준, “주식회사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조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4호(법무부, 2013).
- 심 영, “상법상 감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17).
- _____, “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 이준섭,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정립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0판]」, 박영사, 2022.
- 이형규, “감사·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제32권 제3집(한양법학회, 2021).
- 정대익,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32집 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 정동윤 편, 「주식 상법[회사(Ⅰ), (Ⅱ), (Ⅵ)(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정순현·김춘, 「2022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 정준우,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21).
- 정쾌영,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7).

천경훈,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한국경제법학회, 2021).

최지현(국회입법조사처), “다국적 기업의 「외감법」 적용에 대한 법개정 논의”, 「다국적 기업(유한회사)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 논의」 공청회(김해영 의원 주관) 자료집, 2016. 11. 2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주석외부감사법」, 박영사, 2019.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Ⅱ[제4판]」, 법문사, 2022.

황보현,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8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19).

江頭憲治郎・中村直人, 「論點体系 會社法 4 - 株式會社Ⅳ, 持分會社」, 第一法規, 2012.

上柳克郎・鴻常夫・竹內昭夫, 「新版注釋會社法(1)」, 有斐閣, 1985.

田中亘, 「會社法[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21.

ACFE, Occupational Fraud 2022: A Report to the Nations, 2022.

John C. Coffee, Jr., “The Future as History: The Prospect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93 Nw. U. L. Rev. 641 (1999).

Paul L. Davis & Sarah Worthington,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0th ed., Sweet & Maxwell, 2016.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4/253/EEC).

Abstract

How to Improve Statutory Auditor and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im, Soon-Suk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asks to establish and operate satisfactory statutory audit system of corporations in order for the system to work efficiently. Even Germany where the supervisory board has strong power, there is a German maxim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 which means that the supervisory board is useless during good time, whereas helpless during bad time.

Since corporate governance is influenced comprehensively by social, cultural and corporate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for a certain system more superior than others. The same logic applies to statutory auditor and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As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audit committee of Anglo-American one tier board system and Japan’s intrinsic statutory auditor system on mixed basis, the Korea has most complicated and unique corporate monitoring system. As it has passed almost 23 years after introducing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it needs to identify unique legal problems a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seeks to solve the problems continuously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irstly, in order to separate the supervisory function from business execution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Korea needs to induce f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two trillion won or more to introduc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adding disclosure requirements to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duty of establishing full-time statutory auditor to all listed companies, and to appoint at least one full-time member of statutory audit committee member f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two trillion won or mor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f the member of statutory audit committee works on part-time base, access to the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focus on audit work, and therefore the audit work becomes ineffective.

Thirdly, in case of unlisted companies with a total capital of more than 1 billion won 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since there are many stakeholders such as creditor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qualifications of statutory auditors (currently no restrictions) to secu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other words, qualification requirements should be applied to statutory auditors in order for them to secure the independence from the company's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nd largest shareholders and to have sufficient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audit field.

Fourth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limited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as a means of avoiding regulation, it is necessary for limi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100 billion won or more to establish statutory audit system mandatorily, and f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ith a total asset(or sales) of 50 billion won or more to be subject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of companies and the utilization of audit assistance organizations, which are important issues for the effectiveness of audits, will be dealt with at other opportunities.

Key Words : Statutory Auditor System,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Supervisory Organization,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Corporate Governance